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고 병 준 의원)

의안 번호	26-56
----------	-------

발의년월일: 2026. 4. .

발 의 자: 고병준, 남해석, 장영준,
장정희, 차해영, 최은하

1. 제정이유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의사소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시각장애인 편의증진 및 현장영상해설 지원 책무를 규정
함(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라.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마. 관련 법인·기관·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
(안 제6조)

- 바.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 사.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표창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3. 관계법령

- 가. 「장애인복지법」 제22조
- 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2026. 4. 6. ~ 4. 10.
- 나. 의견제출: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의사소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시각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현장영상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상황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설립한 공단
 -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

른 출자 · 출연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현장영상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문화 · 여가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등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시 현장영상해설 지원 시설 및 설비의 설치 · 운용
2. 공공기관 등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현장영상해설 제공
3.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 절차와 방법, 지원 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기관, 단체 등에게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단체 및 기업체, 관내 국·공립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929호, 2025. 4. 22., 타법개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방송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15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 ② (생략)

③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별표 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3. 시각장애인(視覺障礙人)

-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5조(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등에 현장영상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 및 운용할 수 있다.
2. 공공기관 등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필요한 경우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한다.
3.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 절차와 방법, 지원 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장애인복지과 김소리
연 락 처	02-3153-8875